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843
----------	------

제출년월일 : 2016.06.7.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와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학교폭력의 정의를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안 제2조)
- 나. 안산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위원 위촉대상자를 관련법에 맞게 변경(안 제9조)

개정조례안 : 불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3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전예고(결과) : 불임4

- 입법예고 : 2016. 4. 28. ~ 5. 18.(21일간)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불임5
- 방침결정문 : 불임6

< 불임 1 >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 간에”를 “학생을 대상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안산교육지원청”을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구성 등)”을 “(협의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내의”를 “내외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원(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업무 담당국(과)장
2. 안산시의회 의원
3. 안산상록경찰서 및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안산시 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교육청소년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교육청소년과장 김 종 수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소년계장 최승배
	담당자 성명·전화	이 소현 (행정 2219)

< 불임 2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학교폭력” 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학생을 대상으로
2.(생략)	2.(현행과 같음)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u>안산교육지원청</u>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경기도 안산교육지원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① 내외의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원(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p>
<p>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업무 담당국장</p> <p>2. 안산시 관할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p> <p>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p> <p>4. 시의원</p> <p>5. 판사·검사·변호사</p> <p>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p> <p>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p> <p>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p> <p>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 이 풍부한 학부모</p> <p>10.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p> <p>11. 그 밖에 시장이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1.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업무 담당국(과장)</p> <p>2. 안산시의회 의원</p> <p>3. 안산상록경찰서 및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p> <p>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p> <p>5. 판사·검사·변호사</p> <p>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 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p> <p>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p> <p>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p>
<p>④ (생략)</p> <p>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안산시 또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p> <p>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p> <p>2.~4. (생략)</p>	<p>제10조(위촉 해제) 위촉 해제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4. (현행과 같음)</p>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843
----------	------

제안년월일 : 2016. 7. 6.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안산시학교 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을 수정함.

□ 주요골자

- 용어를 정비함. (안 제9조제3항, 안제13조)
- 지역협의회 위원 위촉해제 규정을 수정함. (안 제10조)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를 “위촉한다.”로 한다.

안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안 제13조 중 “해촉” 을 “위촉 해제”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제9조(구성 등)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③ 당연직 위원은 안산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원(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u>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 구성 등) ③ ----- ----- ----- ----- ----- ----- ----- ----- ----- ----- ----- ----- ----- ----- ----- ----- ----- ----- ----- <u>위촉한다.</u>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제10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현 행	개정안	수정안
경우	경우	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p>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 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 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 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 측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p>		<p>제13조(비밀 유지의 의무) ----- ----- ----- ----- <u>위 족 해제</u> ----- -----</p>